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의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는 “한국으로 초생추를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 초생추는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초생추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 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 초생추의 수출전 12개월간 뉴캐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 중 당해 수출초생추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캐슬병(I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프스, 마렐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 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개정: 고시 1995-52호, '95.7.8)

5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암수 모두)초생추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 초생추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추백리 및 닭티프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다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 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및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고시 1995-52호, '95.7.8)

법률상식

6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수의 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8 수출 초생추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수출 초생추는 한국으로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9 수출 초생추는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에 당해 수출초생추 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가.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 나. 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암,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 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 실시 사유
- 다.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 라.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 마.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 바.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199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종란의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의 종란(이하 “수출 종란”이라한다)은 한국으로 종란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종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종란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2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 종란의 수출전 12개월간 뉴캐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 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 중 당해 종란의 가금에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캐슬병(I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 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프스, 마렉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 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군(암수 모두)종란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 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및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법률상식

6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부의 종계장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수의 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7 수출 종란은 수출용 포장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출 종란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수출 종란은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에 당해 수출종란 이외의 가금, 종란, 조류 및 그 생산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나. 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시료채취일,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 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 실시 사유

다.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라.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마. 종란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바. 수출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과 소독장소와 일시

사.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종란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199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검 사 방 법	비 고
뉴캐슬병 (Newcastle Disease)	적혈구 응집억제 반응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닭마이코플라스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전혈평판응집반응 또는 적혈구 응집억제반응 (Rapid plate agglutination test or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추백리 및 닭티프스 (Pullorum disease/Fowltyphoid)	전혈 급속 응집반응 또는혈청 응집반응 (Plate agglutination with blood or serum)	
전염성 후두기관염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바이러스중화반응 또는 한천겔내 침강반응 (Virus neutralization test or Agar-immunodiffusion test)	
전염성 F낭병 (Infectious Bursal Disease)	한천겔내 침강반응 (Agar-immunodiffusion test)	
마랙병 (Marek's disease)	한천겔내 침강반응 (Agar-immunodiffusion test)	
가금백혈병(Avian leukosis)	ELISA시험법 (ELISA test)	
세망내피증 (Reticuloendotheliosis)	ELISA시험법 또는 한천겔내 침강반응 (ELISA test or Agarimmunodiffusion test)	
전염성기관지염 (Avian infection bronchitis)	ELISA 시험법(ELISA test)	
닭뇌척수염 (Avian encephalomyelitis)	ELISA 시험법(ELISA test)	
산란저하증후군(EDS 76)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전염성 빈혈 (Chicken anemia agent)	바이러스 중화시험 (Virus neutraliaztion)	
계두(Fowl pox)	바이러스중화시험, ELISA시험 또는 한천겔내 침강반응(Virus neutralization, ELISA test or Agar-immunodiffusion test)	
가금결핵(Avian tuberculosis)	튜버쿨린반응검사 또는 균분리동정(Tuberculin test or agent identification)	